

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취소 통보 공시송달 공고
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3] 비고의 2, 동법 시행규칙 제4조(학점인정의 절차)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취소 통보를 하였으나, “폐문부재”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(공시송달) 합니다.

2019년 9월 23일

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

1. 제 목 :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취소 통보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3] 비고의 2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일	송달사유
남*점	671104	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	학습자등록 취소	고졸학력 확인불가	2019.7.30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 : 2019. 9.23. ~ 2019.10.14.
5.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
6. 「행정소송법」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며,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행정심판을 한 경우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.

※ 그 밖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콜센터(☎1600-0400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